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대한 주민
의 의견 제출과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반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해당 내용을 우리 구 관
련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소통
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규정 (안 제22조, 제24조)
-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제외대상 규정 (안 제23조)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절차 규정 (안 제26조)
- 의견 제출시 필요한 각종 서식 마련 (안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시식)

3.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조정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조정과, 전화 : 02-3396-4933, 팩스 : 02-3396-8657, email : kjts8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자치법규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붙임] 자치법규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

제22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중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

제23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4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 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

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 ①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제23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

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제2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전화번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해당되지 않음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3호서식] (뒷면)

의견제출인 명부

*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작성

연번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성명"란에는 의견제출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2.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총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3.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4.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별지 제4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의견제출인	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 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제출의견	제출일자	
	현행 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명	
관계법령		
소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검토일자
	담당자	
	연락처	
검토내용	수용여부/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連署)주민의 수를 정하여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신뢰성 제고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_____</p> <p>_____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_____.</p>
<u><신 설></u>	<p>제2조(정의) 7.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p>
<p>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u><삭 제></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p>
<u><신 설></u>	<p>제22조(주민의 규칙 의견제출)</p> <p>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주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제출을 처리해야 한다.</p>
<u><신 설></u>	<p>제23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43 1708 1389 1820">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 <li data-bbox="843 1843 1389 1955">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li data-bbox="843 1977 1389 2036">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 style="text-align: center;">범위를 벗어나는 사항</p> <p>제24조(의견제출서 작성방법)</p> <p>①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p> <p>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p>
<u><신 설></u>	<p>제2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p>

현 행	개 정 안
	<p>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p>
<p><u><신 설></u></p>	<p>제26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통보는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한다.</p> <p>②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검토를 생략한 경우 그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p>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검토 결과를</p>

현 행	개 정 안
	<p>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의견제출이 제23조 각 호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외 사유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⑤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과통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p>
<u><신 설></u>	<p>제27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입법절차를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p>
<u><신 설></u>	<p>제2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p>
<u><신 설></u>	<p>제2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p>

현 행	개 정 안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